



즐거운 변화, 사람사는 금남!

번호	21호
일시	2017.11.8

當面主要懸案事項



회남재 숲길 걷기(2017.10.28)

금 남 면

目 次

총무 담당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조	1
2. 굴폐각 적법처리 안내	1
3. 효자·효부상 및 향토문화상 후보자 추천	2
4. 2018년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신청 홍보	3
5.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	4

주민생활지원 담당

1. 2017년 하반기 경로당 난방비 지급	6
2. 2017년 냉방비 지원사업 추가 지원	6
3.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계획	7
4.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8
5. 2017년 눈건강 시력지킴이 봉사활동 계획	10

산업경제 담당

1. 2017 농산물우수관리(GAP) 2차 기본교육 계획	11
2. 2018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12
3. 2018년 경제수조림(사유림) 사업 계획 통보	12
4. 겨울철 산불조심기간 산불예방 철저	13

민원 담당

1.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보	14
2.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14

1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협조

담당자 : 강지연
(☎) 880-6205

□ 개 요

- 기 간 : 2017. 11. 1. ~ 2017. 12. 31
- 대상건수 : 341건 총 미수납금 9,025,250원
- 납부방법
 - 고지서 있을 시 고지서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납부
 - 고지서가 없을 경우 농협 847-01-006147(예금주 하동군수)로 납부하되 체납자 본인 또는 차량번호로 납부
 - 1건 이상 체납된 경우 금액별로 따로 납부해야 함

2

굴폐각 적법처리 안내

담당자 : 강지연
(☎) 880-6205

□ 배 경

- 겨울철 지역주민들이 굴 박신 작업으로 발생하는 굴폐각을 작업장 주변에 방치하거나 전답에 무단 투기하여 환경오염 및 주민불편신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굴 폐각 처리기준 및 처벌기준

구분	처리기준	불법투기 벌칙 및 과태료
5톤 이상 발생 사업장 폐기물	환경보호과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발생 생활폐기물	매립용종량제 봉투(흰색)에 담아 배출하거나 직접 매립장 반입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가처리기준(직접 농경지에 퇴비화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 :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를 득한 후 재활용
 - 생활폐기물 : 골패각 파쇄기 등으로 파쇄 등 감량화 처리 후 재활용

□ 협조사항

- 농경지에 골 패각이 파쇄 등 감량화 처리 되지 않은 상태로 버려지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협조

3

효자·효부상 및 향토문화상 후보자 추천

담당자 : 장민경
(☎) 880-6203

□ 시상계획

- 수상인원
 - 효자·효부상 : 2명
 - 향토문화상 : 1명(개인 및 단체)
- 추천기한 : 2017. 11. 17(금) 18시까지
- 접수처 : 하동문화원
- 수상자 발표 : 2017. 12월초 개별통지
- 시상 : 2017년도 문화원 가족 송년행사시 시상
- 시상품 : 상패 및 부상

□ 추천대상 및 자격

- 효자·효부상
 - 군내 거주자로 자식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를 다하며, 지역사회에 모범이고 주위로부터 칭송이 자자한자.
- 향토문화상
 - 만20세 이상으로 하동군 태생이거나 현재 하동군에 거주자로서 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품위가 있는 자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함.
 1. 군민의 정서순화 및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문학, 예술, 사진, 서예,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국악), 공연예술, 청소년 문화예술 등을 기획한 창작문예활동 등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

2. 한국예술총연합회(예총)회원 및 공인협회 회원 및 단체
3. 1항의 각 분야별 전시, 공연, 발표를 3회 이상 실적과(신문, 도서 포함) 경상남도 이상 수상경력자(공모).
4. 기타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 후보자 추천

- 제출서류 : 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향토문화상), 주민등록 초본, 사진(명함판), 증빙자료(사진, 보도자료, 기타)

□ 문의처 : 하동문화원(☎ 884-3929)

4	2018년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신청 홍보	담당자 : 장민경 (☎) 880-6203
----------	-------------------------------	---------------------------

□ 송주법 주민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이란?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와 옥외형 변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전에서 매년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345kV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

구분	765kV	345kV	비고
송전선로 주변지역	1,000m이내	700m이내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 기준
변전소 주변지역	850m이내	600m이내	

- 송전선로 주변 마을 : 대송, 사등, 덕포, 상삼천, 하삼천, 금오, 진정, 조금, 사궁, 영천, 계항

☞ 전체 마을주민이 아닌 마을 내 일부 세대만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 여부는 반드시 한전에 문의할 것

○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종류	시행자	지원대상자 및 시행방법
주민지원사업 (전기요금보조)	한전	지원사업 신청기간 내 지원사업을 신청한 세대에 균등지원

☞ 부과되는 전기요금에서 지원금액만큼 감액 처리됨

○ 지원금 산정

- 세대별 지원금(전기요금 보조)은 2018년 지원대상 집계 후 산정됨
- 마을공동사업비는 세대별 지원금에 마을별 지원대상수를 곱한 금액만큼 지급됨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첨부하여 한전에 제출

※ 보내실곳 : 한국전력 경남지역본부 송전운영부

51439)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 신청기한 : 2017년 11월말까지

○ 문의처 : 송전운영부 ☎ 717-2788, 2789, 2889

□ 협조사항

- 신청안내문 발송 명단을 확인하셔서 최대한 많은 면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1) 송주법 주민지원사업 명단 1부(별첨).

5

불법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근절 홍보

담당자 : 김동호
(☎) 880-6204

□ 개 요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됨.
-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가능함.(영업소 사용불가).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80조)

□ 불법제품 사용시 피해상황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
-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하천 오염.
- 악취가 발생.

1

2017년 하반기 경로당 난방비 지급

담당자 : 김윤옥
(☎) 880-6227

□ 개 요

- 목 적 :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편의 제공
- 지원금액 : 경로당별 600천원
- 지원기준 : 월300천원(개소당) x 2개월(11,12월) = 600천원
- 지급일자 : 2017. 10. 27
- 지급방법 : 각 마을 노인회 계좌에 입금
※ 경로당 난방비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2017년 냉방비 지원사업 추가 지원

담당자 : 김윤옥
(☎) 880-6227

□ 개 요

- 내 용 : 7~9월분 냉방비 부족분 추가 지원
 - 경로당별 7~9월 전기요금 납부 현황 확인후 부족분(한전 통해 확인)
 - 냉방비 최고 지원 금액 : 50만원
 - 지원기준 : 1만원이상 금액
- 지급일자 : 2017. 10. 27
- 마을별 냉방비 내역

경로당명	예산배정액		전기료 지출액				집행잔액	추가지원	비고
	등급	배정액	계	7월	8월	9월			
중평	B	50,000	82,650	31,450	41,530	9,670	-32,650	32,000	
상촌	B	50,000	2,330	770	790	770	47,670		
대치	D	150,000	153,300	40,120	103,090	10,090	-3,300		
구노량	C	100,000	69,720	11,970	39,180	18,570	30,280		
신노량	B	50,000	324,880	88,330	177,560	58,990	-274,880	274,000	
미법	E	200,000	204,500	113,640	62,050	28,810	-4,500		
수문	B	50,000	49,070	22,440	17,540	9,090	930		
소송	E	200,000	190,080	68,080	73,630	48,370	9,920		

경로당명	예산배정액		전기료 지출액				집행잔액	추가지원	비고
	등급	배정액	계	7월	8월	9월			
신기	D	150,000	35,670	13,850	12,660	9,160	114,330		
대송	F	250,000	80,180	31,080	41,150	7,950	169,820		
사등	B	50,000	67,600	19,760	32,830	15,010	-17,600	17,000	
덕오	C	100,000	17,110	5,160	7,480	4,470	82,890		
덕포	C	100,000	66,860	22,010	33,090	11,760	33,140		
상삼천	C	100,000	98,640	31,400	39,750	27,490	1,360		
하삼천	C	100,000	56,460	16,480	30,550	9,430	43,540		
금오	B	50,000	165,220	49,850	77,130	38,240	-115,220	115,000	
진정	K	500,000	356,230	84,210	176,670	95,350	143,770		
조금	E	200,000	59,160	10,850	43,820	4,490	140,840		
사궁	E	200,000	159,100	42,460	80,800	35,840	40,900		
영천	G	300,000	89,660	33,240	46,620	9,800	210,340		
계항	C	100,000	106,920	36,800	58,110	12,010	-6,920		
대도	D	150,000	183,270	48,410	91,580	43,280	-33,270	33,000	

□ 협조사항

- 집행잔액이 있는 경로당은 연말 정산시 반납 조치
 - 운영비 및 난방비로 사용 불가

3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계획

담당자 : 김덕경
(☎) 880-6228

□ 개 요

- 기 간 : 2017. 11. ~ 2018. 2
- 목 적 : 동절기 한파 등에 대비하여 거리노숙인 등 보호강화
- 내 용
 - 응급잠자리 이용 유도로 동사사고 사전예방
 - 만성 거리노숙인에 대한 정신보건 개입 강화
 - 재활프로그램 및 주거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귀 가능토록지원
- 보호대책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유지
 - 긴급구호물품 지원(하동자활센터,푸드뱅크 연계)

- 현장중심 의료지원 강화(119소방대 협조)
- 노숙인 건강관리활동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협조사항

○ 노숙인 발생시 대처방안

- 응급실이용 : 하동우리들병원(883-7575), 하동병원(880-4220)
- 노숙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인근 노숙인시설로 이송 조치
- 노숙인 재활 및 요양시설 이송 시 차마임 지급

※ 경남 노숙인 시설 현황

시군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정원
창원시	창원시립복지원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북8길 6	256-0079	56
진주시	진주복지원(시립)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 98버널 34-13	762-1157	150
사천시	합심원	사천시 삼상로 613	835-8557	120
의령군	새삶의 집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67-7	574-3633	95

4

2017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안내

담당자 : 김덕경
(☎) 880-6228

□ 개 요

- 신청기간 : 2017. 11. 17.(금)까지 면사무소에 신청
- 대 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등록 장애인
-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지원품목	품목코드	장애종류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1~3급뇌병변,심장장애인	35만원	3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04 33 06	1~3급 심장장애인		
음성유도장치 (음향신호기리모컨)	12 39 09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음성시계	22 27 12	시각장애인	2만원	2년
시각신호표시기	22 27 03	청각장애인	15만원	2년
진동시계	22 27 12	청각장애인	3만원	2년

지원품목	품목코드	장애종류	지원기준	내구연한
보행차	12 06 06	지체,뇌병변 장애인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12 06 09	지체,뇌병변 장애인		5년
탁자형 보행차	12 06 12	지체,뇌병변 장애인		5년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15 09 03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5만원	1년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15 09 13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15 09 16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접시 및 그릇	15 09 18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음식 보호대	15 09 21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기립훈련기	04 48 08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150만원	3년
헤드폰(청취증폭기)	22 06 24	청각장애인	12만원	2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22 03 18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22 30 21	시각장애인	80만원	2년
목욕의자	09 33 03	지체,뇌병변 장애인	60만원	5년
녹음 및 재생장치	22 18 03	시각장애인	50만원	3년
휴대용 경사로	18 30 15	지체,뇌병변 장애인	30만원	8년
이동변기	09 12 03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60만원	5년
미끄럼 보드, 미끄럼 매트 및 회전좌석	12 31 03	1~3급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35만원	4년
장애인용의복	09 03 05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15만원	2년
휠체어용 탑승자 고정 장치 및 기타 액세서리	12 24 30	1~3급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인	1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09 12 25	지체,뇌병변 장애인	25만원	5년
환경조정장치	24 13 03	1~3급 지체, 뇌병변장애인	40만원	3년
대화용장치	22 21 09	뇌병변, 발달, 청각, 언어 장애인	60만원	4년

□ 협조사항

- 저소득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일 시 : 2017. 12. 6.(수) 13:00 ~ 17:00
- 장 소 : 진교면사무소 2층
- 주 관 : 눈건강 시력지킴이 다비치안경체인 봉사단
 - 대 표 자 : 김인규 (☎ 010-5488-1441)
- 대 상 :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 돈보기 : 참석자 전원
 - 시력맞춤안경 : 14명(금남면)
 - 안경에 대한 잘못된 상식 교육
 - 노화에 의한 노안의 특징 및 마사지법 등 교육

□ 협조사항

-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시력맞춤안경 대상자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력맞춤안경 신청자 제출서식

마을명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1

2017 농산물우수관리(GAP) 2차 기본교육 계획

담당자 : 배소현
(☎) 880-6213

□ 개 요

- 일 시 : 2017. 12. 5.(화) 14:00 ~ 17:00 (3시간)
- 장 소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
- 교육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
- 교육내용
 -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
 - 농약안전사용 및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규정 등
- 교육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록 및 개회	
14:00~15:30 (1시간 30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15:30~15:40 (10분)	휴식	
15:40~16:50 (1시간10분)	GAP 인증 및 사후관리 요령	
16:50~17:00 (10분)	질의응답	

□ 협조사항

- 마을방송 및 자체회의 시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11. 20.(월)일까지 교육희망자 명단 제출

2**2018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

담당자 : 배소현

(☎) 880-6213

□ 개 요

- 접수기간 : 2017. 11. 1.(수) ~ 2017. 12. 15.(금)
- 장 소 : 금남면사무소 산업경제부서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20%), 지방비(30%), 자부담(50%)
- 사업대상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원료
 - 녹비작물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 인증 자재(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 → 공시 및 품질인증현황에서 확인)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및 자체회의 시 사업희망자에게 신청 홍보

3**2018년 경제수조림(사유림)사업 계획 통보**

담당자 : 유성룡

(☎) 880-6214

□ 개 요

- 신청기한 : 2017. 11. 30.(목) 한
- 사업기간 : 2018. 3. ~ 4.
- 조림방법 : 군시행(입찰)
- 신청자격 : 신청일 이전에 조림신청지가 기 벌채완료(모두베기) 되어 있거나, 벌채허가(신고) 후 모두베기 작업을 '18년 2월말까지 벌채 완료 할 예정인 산지로 최소면적 1ha이상인 경우

□ 협조사항

- 마을 방송 및 자체회의 시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게 홍보 실시

□ 금남면 산불감시원 운영

- 산불감시원 운영기간 : 2017. 11. 1. ~ 2018. 5. 15.
- 금남면 산불감시원 7명 운영
- 산불감시원 감시활동에 따른 지도·홍보 협조

□ 산불관련 처벌사항

- 허가없이 산림 내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100만원
- 허가없이 산림 내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 과태료 50만원
- 불이 타인소유의 산림까지 확산되어 피해를 입힌 때 :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 산림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히 산림과 연결한(100m)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산폐기물 태우기
절대금지 (발견즉시 면사무소 연락 협조)

□ 협조사항

- 입산 시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 휴대 금지
- 산림 내와 산 연결지에서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등 소각행위 금지
-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금지
-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면사무소(880-6212~6214), 금남파출소(882-0112), 진교119안전센터(880-9370) 등에 신속하게 신고
- 마을방송 및 자체회의 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고취

1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홍보

담당자 : 한아름
(☎) 880-6225

□ 개 요

- 결정 • 공시 내용 : 관내 25,183필지, 토지지번별 m²당 가격
※ 가격기준일 : 2017. 7. 1./ 결정 • 공시일 : 2017. 10. 31.
- 열람 방법 : 군청 민원과 및 면사무소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 기간 : 2017. 10. 31. ~ 2017. 11. 29.
- 이의신청 방법
 - 서 면 : 하동군청 민원과 및 금남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및 우편접수 가능
 - 온라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 민원신청

□ 협조사항

- 토지소유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
붙임2) 마을방송안 1부.

2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담당자 : 한아름
(☎) 880-6225

□ 개 요

- 사실조사 기간 : 2017. 11. 1.(수) ~ 2017. 12. 15.(금) [45일간]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중점정리 내용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

○ 사실조사 결과 추후조치 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협조사항

- 필요시 담당공무원과 합동 조사 및 세대방문 협조
- 연락 가능한 무단 전출자에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유도 및 기간 내 미이전 시 직권 거주불명등록 됨을 안내

(붙임2)

방 송 “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동군에서 2017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세와 국세 및 각종 대부료와 부담금의 기초
가 되는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
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하동군청 민원과와 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께서는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터넷이나 마을회관에 비치된 지가열람부,
군청 민원과 및 면사무소 전화열람 등을 통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군청 민원과 또는
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